

2016년도 제1회 재무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I. 추경예산 개요

1. 세 입

- 재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액은 16조 5,128억 2천 9백만원으로 당초보다 1조 6,887억 8천 5백만원(11.4%)이 증가된 수준임.

<2016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예산	추경예산(안)	당초예산 대비	
			증 감	증감률
계	14,824,044	16,512,829	1,688,785	11.4
지방세수입	14,125,773	14,125,773	0	0.0
보통세	12,500,921	12,500,921	0	0.0
목적세	1,399,604	1,399,604	0	0.0
지난년도수입	225,248	225,248	0	0.0
세외수입	698,271	698,271	0	0.0
경상적세외수입	38,417	38,417	0	0.0
임시적세외수입	659,854	659,854	0	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	1,688,785	1,688,785	100.0
순세계잉여금	-	1,688,785	1,688,785	100.0

○ 추가경정예산 주요 세목별 증감 내역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2016년 예산	추경예산(안)	당초예산 대비	
			증 감	증감률
내부수입등 및 내부거래	-	1,688,785	1,688,785	100.0
순세계잉여금	-	1,688,785	1,688,785	100.0

2. 세 출

- 재무국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2조 2,340억 2천 8백만원으로 기정 예산 2조 557억 8천 3백만원 대비 8.7%증가된 수준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도			증감률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		
총 계	2,055,783	2,234,028	178,245	8.7	
행정관리	소 계	737,558	870,350	132,792	18.0
	행정운영경비	650,204	650,204	0	0.0
	재무활동	0	0	0	0.0
	사업비	87,354	220,146	132,792	152.0
교 부 금	1,318,225	1,363,678	45,453	3.4	

○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별	2016 예산			증감률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	
합 계	366,538	554,782	178,245	
행정수요대비공유 재 산 확 보	64,879	195,879	131,000	201.9
한국지방세연구원 법 정 출 연 금	0	1,636	1,636	100.0
지방소득세 소득분 특별징수납세조합 보 조	317	473	156	49.2
시세징수교부금	301,342	346,794	45,453	15.1

Ⅱ . 검토의견

1. 세입예산

- 재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은 내부수입 등 내부거래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조 6,887억 8천 5백만원임.

◇ 추가경정예산 주요 세목별 증감 내역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2016년 예산	추경예산(안)	당초예산 대비	
			증 감	증감률
내부수입등 및 내부거래	-	1,688,785	1,688,785	100.0
순세계잉여금	-	1,688,785	1,688,785	100.0

-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에 수립된 지출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되므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예산보다 적게 집행되어 발생하는 것이나, 이는 당초 세입예산 편성시 면밀한 세수추계에 의하지 아니한 주먹구구식 세입예산 편성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향후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회계연도 말까지의 세입 규모에 대한 검토와 함께 2017년도 일반 세입예산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도록 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세입예산 편성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2. 세출예산

- “금번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4건에 1,782억 4천

5백만원으로 “행정수요대비 공유재산확보”를 위한 1,310억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16억3천 6백만원, “지방소득세 소득분 특별징수납세조합 보조”를 위해 1억 5천만원 및 “시세 징수교부금” 454억 5천 3백만원 등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임.

가. 행정수요대비 공유재산확보

- 본 건은 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인 체비지를 일반회계로 이관하여 재산소유권을 정리하고 시유재산의 최적 활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노후재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648억 7천 9백만원)대비 201.9% 증가한 1,958억 7천 9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행정수요 대비 공유재산 확보					
구 분	예 산 액				비 고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 감	증 감 률	
행정수요 대비 공유재산 확보	64,879	195,879	131,000	201.9	

(단위 : 백만원)

◇ 최근 3년간 체비지 유상이관비 납부현황

연도별 납부내역	2014년				2015년				2016년		
	계	DDP 교환부지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남부기동대 교환부지	계	DDP 교환부지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남부기동대 교환부지	계	DDP 교환부지	남부기동대 교환부지
납부금액	17,993	6,847	10,270	876	19,596	8,765	10,000	831	55,000	50,194	4,806

(단위 : 백만원)

- 행정수요 대비 공유재산 확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중 체비지 회계간 유상이관을 위해 “서울의료원 강남분원”부지(31,656,9㎡)에 1,310억원 (‘16년 12월 31일 납부예정)을 납부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2015년에

매각하기로 하였던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이 두 차례 공개입찰에도 불구 하고 매각에 실패함에 따라, 감정평가수수료 등 관련 추가적인 예산낭비 요인이 없는지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있는 해명과 함께 개선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최근 3년간 체비지 유상이관비 지출내역 및 지출 이자내역

(단위 : 백만원)

납 부 내 역	지급합계 (원금+이자)	원 금	연부납 이자
합 계	92,589	83,315	9,274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부지	20,271	20,271	-
D D P 교환부지	65,806	57,012	8,794
남부기동대 교환부지	6,512	6,032	480

○ 한편, 서울시 소유 체비지의 정확한 운영 실태 파악과 함께 점유·유휴 체비지의 장기간 방치, 현상유지 위주의 소극적 관리체계, 관리인력의 비전문성, 고비용 저 효율적 재산관리 등 제반 문제점들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미매각 점유·유휴상태인 체비지에 대한 관리효율 향상과 수익성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처리방안 마련 노력도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17년도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금액	추진세부내용
계		81,261,289	
체비지 유상이관비 지급	2017.01~2017.12	79,261,289	체비지 유상이관비 지급
시설 관리	2017.01~2017.12	2,000,000	시설안전·수선비 및 재산교환차액 등

나.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 본 건은 지방재원의 확충과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 단체가 직접 출연하여 설립·운영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출연금(전전년도 보통세의 0.015%) 지원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른 출연 의무 이행을 위해 2016회계연도 출연분 16억 3천 6백만원을 편성하려는 것임.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비 고
	기정예산	추경 예산	증 감	증 감 률	
한국지방세연구원 법 정 출 연 금	0	1,636	1,636	49.2	

[세출 예산 내역]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2013	955,466	0	0	955,466	955,466	0	0
2014	1,975,228	0	0	1,975,228	1,975,228	0	0
2015	1,508,222	0	0	1,508,222	1,446,522	0	61,700

- 서울시의회는 제270회 임시회 및 2015 및 2016년 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사의 적정성, 출연금의 규모, 연구원의 기금적립액의 용도, 서울시연구 실적 미흡 등을 이유로 관련 출연금(1,636백만원)의 시의회 출연동의안(2015.10.30)을 보류 처리하고, 관련예산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으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재차 편성하여 제출한 것임.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및 지방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교육 등을 위해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의거해 ‘한국지방세연구원’이 2011년 4월 개원하여 2016년 9월 기준 총341건, 연평균 68건 연구 실적물을 생산하며, 지방세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 일정 부분 역할과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하겠음.

◇ 연도별 연구 현황(2011년~2016년)

(단위 : 건)

연도 건수	총 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341	4	46	61	55	89	86
연구원 자체 선정	173	4	32	46	30	33	28
지자체 (서울시)	97 (40)	-	11 (6)	12 (9)	8 (4)	38 (10)	28 (11)
행자부	64	-	3	3	16	18	24
기 타 (외부기관 수탁과제 등)	7	-	-	-	1	-	6

※ 연도별 건수 : 연구보고서 발간연도 기준 ※ '16년 : 수행중 과제 포함

<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업 >

1. 지방세정책 수단의 개발에 관한 연구
2.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3. 지방세수입의 추계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4.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인 조정에 관한 연구
5. 지방세 및 지방재정에 관한 자료의 수집·관리
6. 지방세정책 및 지역경제·재정정책 조정 등에 관한 조사·연구
7. 지역경제의 경제·사회 현상에 관한 종합적 연구
8. 지역사회 경제정책 및 정책수단에 관한 연구
9. 지역경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사업
10. 지방세 담당 조직 및 인사 발전에 관한 연구
11.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교류·협력과 정부, 국내외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연구용역의 수탁

※ 한국지방세연구원 정관 제4조

○ 다만,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재원은 법령에 의거 전국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의 재정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연구원의 인사권 한계와 재정고권 침해 및 출연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본건에 대해서는 보류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동의안(831)」에 대해서 의결 여부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임.

※ 출연주체(전 지자체에서 '행정자치부와 지자체로 출연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와 출연기준(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5%를 0.01%이내) 및 출연방법(‘법정 고정출연금’에서 ‘연구원 세출예산 연동 변동출연’)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등 관련 기관과의 종합적인 협의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서울시의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서울시전체 (A=B+C)	968	1,134	1,281	2,303	1,758	1,959	9,403
시분청(B)	795	953	955	1,975	1,447	1,636 (미출연)	7,761
자치구(C)	173	181	326	328	311	323	1,642
출연금합계(D)	3,939	4,597	6,587	7,711	7,136	8,269	38,192

◇ 기금적립액 : 5,706백만원 (2016.8월말)

(단위 : 백만원)

연 도	총 적립액 (이자포함)	적립 원금				
		소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5,706	5,624	1,095	768	2,905	856

- 적립원금 : 전년도 잉여금(집행잔액 및 수입결산액) + 당해연도 기금적립금 편성액
(* 2015년부터 편성)

다. 지방소득세 소득분 특별징수납세조합 보조

- 본 건은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납세조합에 매 분기별로 납입세액에 따라 징수교부금을 교부하는 바, 납세조합의 납입세액 증가를 반영하여 기정예산(3억1천 7백만원) 대비 총 1억 5천 6백만원 (49.2%)이 증가한 4억 7천 3백만원으로 증액 조정하려는 것임.

지방소득세 소득분 특별징수납세조합 보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비 고
	기정예산	추경 예산	증 감	증 감 률	
목 적 세 계	473	317	156	49.2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세액 증가로 교부금액도 증가

※ 기정예산(317,300천원) + 2/4분기 미지급액(58,026천원) + 3/4분기 지급대상액(97,974천원)

◇ 최근 3년간 납세조합 징수액 및 교부금 보조(교부)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1월~9월)	2015	2014
징수액	8,026	8,104	9,532
보조(지급)액	317	334	477

○ 우리나라는 납세자 스스로가 단체를 결성하여 해당 구성원의 소득세 등을 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세원의 파악과 세수의 적기 확보가 곤란한 농·축·수산물 및 노점상인과 영세사업자등에 대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고자 납세조합징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다음의 측면에 대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1954년도에 납세조합징수제도가 만들어져 1960년도에 납세조합징수제도가 한때 폐지되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현재까지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12개 구청 17개 납세조합이 납세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첫째,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율적 납세풍토를 조성하여 세정협력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서울시나 행정기관이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민간에게 그 징수를 위탁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 조세국가의 세정제도에는 부합된다고 하기 어려운 제도라고 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둘째, 향후 정확한 과세자료의 확보를 위해서 점차 축소해 가야 할 제도임에도 그 동안 징수편의라는 행정상의 편의성 때문에 조세제도상에서 만성적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비판과 납세조합 비리와 허술한 관리문제 등이 발생한 바,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필요성도 동시에 요구된다고 하겠음.

납세조합 현황

(2016. 10월말 기준)

연번	자치구	조 합 명	지정연도	회원수	주 소	업종별
1	종 로 구	주한미국대사관 한국인 납 세 조 합	1993	406	세종로 32	외국기관
2		주한일본대사관 납세조합	1978	78	중학동 18-11일본대사관	외국기관
3		세양을근 납세조합	2002	204	새문안로5가길 28 (적선동) 1907호	외국기관
4		한국해외취업선원 납 세 조 합	1975	496	세종대로 23길 54 세종빌딩 10층	외국기관
5	중 구	한국화웨이납세조합	1981	54	남창동49-1 대도E동3층	화웨이
6		중부시장 해산물 납 세 조 합	1977	244	오장동44-12 중부빌딩 403	수산물
7	용 산 구	글로벌을근 납세조합	2006	1,197	한강대로 273	외국기관
8	성 동 구	엠코코피아납세조합	2002	7	성수동 2가 280-8	외국기관
9	성 북 구	강남 납세조합	2002	33	성북동31-57	외국기관
10	마 포 구	한국을근 납세조합	1978	540	상암동 1660 월드컵파크 710-401	외국기관
11	양 천 구	(주)오렌지텍스	2013	171	목동서로201 KT정보통신센터20층	외국기관
12	금 천 구	금천식육부산물 납 세 조 합	1997	26	독산동 293-6,유창빌딩 9층	축산물
13	영등포구	서울지구 납세조합	1977	684	여의도동 10-2	외국기관
14	동 작 구	노량진농수산물 납 세 조 합	1976	400	노량진동 13-8	수산물
15	강 남 구	남산을근 납세조합	1983	1,065	논현동 71-2,건설회관2층	외국기관
16	송 파 구	가락축산물 납세조합	1997	9	가락동 600	축산물
17		청과작업사납세조합	2000	25	가락동600	청과물

※ 외국기관근로(11개소), 축산물(2개소), 화웨이(1개소), 수산물(2개소), 청과물(1개소)

※ 중구 소재 남대문수산물납세조합 : '16.2월 폐업

라. 시세징수교부금

- 재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중 “시세징수교부금”에서 454억 5천 3백만원을 증액하고자 하고 있음. 시세징수교부금은 관련법령규정(「지방세기본법」 제67조 및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17조)에 근거하여, 매월 각 자치구에서 징수하고 납입한 시세에 대하여 그 처리비로써 납입액의 3%를 다음 달 말일까지 각 자치구에 지급하는 법정 경비임.

시세징수교부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비 고
	기정예산	추경 예산	증 감	증 감 률	
시세징수교부금	301,342	346,794	45,453	15.1	‘15년 세입초과분에 대한 시세징수교부금을 16년 예산으로 선집행함에 따라 15년 정산분 반영

- 금번 추경은 2015년도 취득세 감면보전분 중 징수교부금에 해당하는 미지급 재정보전분과 부동산 거래증가 등에 따른 취득세 증액분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추가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중앙정부는 2011년부터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체계적인 지방재정보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취득세 감면 정책을 실시하였는 바, 행정자치부가 취득세 감면정책으로 감소한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 감면액을 보전해주고 있는 상황임.¹⁾

1) 취득세 감소분에 따른 정부보전금 지원은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을 전액 보전하여 지자체에 대한 손해가 없도록 하는 데 있는 만큼 사군구(기초자치단체)도 재정보전금 교부대상에 포함됨(행정안전부 질의회신 결과, 지방세운영과-5332 2011.11.18).

○ 집행부는 당초에 해당 예산을 편성하지 못함에 따라 금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인 바, 자치구 재정 확보에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취득세 증액편성에 대한 징수교부금은 부동산거래증가에 따라 당초 취득세 징수 예상액에 비해 초과 징수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취득세 증액분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취득세 3%)을 증액교부하려는 것임.

◇ 부동산 거래 동향

(단위 : 건)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4년	월계	20,827	23,450	29,262	26,178	21,467	20,311	24,149	23,916	26,340	33,085	27,771	27,679
	누계	20,827	44,277	73,539	99,717	121,184	141,495	165,644	189,560	215,900	248,985	276,756	304,435
'15년	월계	24,628	26,420	39,946	40,134	37,544	37,041	40,813	32,790	31,655	35,771	33,724	34,776
	누계	24,628	51,048	90,994	131,128	168,672	205,713	246,526	279,316	310,971	346,742	380,466	415,242
'16년	월계	27,333	24,996	29,912	33,705	37,471	37,381	42,880	43,541				
	누계	27,333	52,329	82,241	115,946	153,417	190,798	233,678	277,219				

구 분	2017년 추계(A)	2016년		예산대비		전망대비	
		예산(B)	전망(C)	금액 (A-B)	비율 (A/B)	금액 (A-C)	비율 (A/C)
소 계	3,406,022	2,743,833	3,774,720	662,189	24.1	-368,698	-9.8
부 동 산	3,406,022	2,743,833	3,774,720	662,189	24.1	-368,698	-9.8

- 취득세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보전해 주는 징수교부금을 확대하는 것은 자치구 재정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는 하겠으나, 취득세 감면액의 보전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받은 보조금을 자치구로 교부하는 것이 최근 서울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볼 때 서울시의 건전재정운영에 부합하는 것인지, 취득세 징수를 위한 자치구의 추가적인 노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받은 서울시 세입의 일부를 자치구에 징수교부금 명목으로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한 재정운영 방법인지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음.

마. 집행실적 저조 사업에 대한 검토

- 2016회계연도 재무국 소관의 각 사업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2016년 하반기가 마무리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나타나고 있음. 11월 23일 기준, 집행률이 80%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업들(〈표〉 세부사업별 집행실적 현황 참조)이 있는 바, 해당 사업들에 대한 집행가능 여부와 향후 예산편성상 감액 조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 등이 요망된다 하겠음.
- 특히,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 중 “계약정보관리 및 공공구매 업무추진”의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와 “시세 세원발굴 지원”의 ‘포상금’의 경우에는 예산집행율이 36.6% 및 34.2%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인 바, 집행부는 해당 사업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재무국 세출예산 집행 실적 현황

(단위 : 천원, % / '16.11.23. 기준)

구 분	'16년 예산현액	집행현황		결산전망	사업내용·추진실적
		금액	집행률		
합 계	2,069,590,178	1,939,030,913	93.7	2,053,951,044	
사업예산(계)	1,419,385,437	1,385,444,513	97.6	1,418,830,295	
재 무 과	1,944,125	1,487,640	76.5	1,845,786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1,476,630	1,141,434	77.3	1,449,578	-공동 행정물품 보급지원 및 반납 물품, 재활용 등 자재창고 운영 -노후물품 및 복합기, 프린터 구매지원등
2015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	224,455	195,920	87.3	204,830	-서울시 통합 결산서 작성(1~3월) -결산검사 수검(3~5월) -시민참여결산 실시(5~6월) -시의회 결산승인(6월) -알기쉬운 재무정보 제작(7월) -재정연감등 결산통계 작성(8~10월)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30,241	30,241	100.0	30,241	-e호조 시스템 자치단체별 분담금 지급
계약심의회위원회 등 운영	20,520	16,200	78.9	19,800	-입찰참가자 자격제한, 계약체결 방법, 부정당업자 제한 등 심의 -위원회 구성 : 변호사 등 13명 -'16년 11회 개최, 96건 심의
전자계약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납부	72,000	59,850	83.1	70,000	-나라장터 입찰공고 수수료 납부 (2016.10월말까지 총 2,709건)
계약정보관리 및 공공구매 업무추진	120,279	43,995	36.6	71,337	-서울시 공공조달 백서 제작 : 8월 -계약마당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자산관리과	81,573,983	73,591,937	90.2	81,569,133	
행정수요 대비 공유재산 확보	64,955,048	58,287,093	89.7	64,955,048	-체비지 유상이관비 상환 -동북권 복합문화센터 건립부지 매입대금 완납 및 소유권 이전완료 -노후·저활용 재산 정밀안전 진단 및 보수·보강 추진(6개소)
시유재산 관리위임	500,000	499,215	99.8	499,215	-자치구 위임 시유 일반재산 관리 및 처분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16,021,031	14,734,349	92.0	16,019,830	-시유재산에 대한 공재(보함) 가입 -재산 교환·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실시 -시유지 집단화 사업추진(2개소) -재산업무 담당 공무원 연찬회 개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5회, 119건)
시유재산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97,904	71,280	72.8	95,040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추진
계약심사과	107,588	67,601	62.8	82,800	
계약심사 업무추진	75,900	45,183	59.5	56,000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절감 (2,600건 1조 7,366억원 심사/ 1,265억원 절감, 절감률 7.3%) -원가분석자문회의 실시 : 7회 (11~12월 10회 실시예정)
설계경제성 심사제 활성화 및 운영	31,688	22,418	70.7	26,800	-설계VE 특별교육과정 실시:7월 -설계VE담당 공동연수 실시:10월
세 제 과	1,017,003,30	993,365,003	97.7	1,016,992,421	

구 분	'16년 예산현액	집행현황		결산전망	사업내용·추진실적
		금액	집행률		
	4				
재정보전금	1,016,882,930	993,261,617	97.7	1,016,882,930	-재정보전금 교부를 통한 자치구간 재정격차 해소 -공동재산세전출금 9,677억원 교부(3회 교부, 152억원 12월교부예정) -면허세보전금 255억원 교부(3회 교부, 85억원 12월교부예정)
세무공무원 정책토론회	10,374	10,144	97.8	10,144	-연구과제 발표·토론을 통한 제도 개선사항 도출 및 법령개정안 마련 -세제개선 공동연수 개최(4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110,000	93,242	84.8	99,347	-지방세 심의를 통한 납세자 권리보호 -위원회 구성 : 판사 등 25명 -'16년 총 19회 253건 심의
세 무 과	310,515,086	309,428,472	99.7	310,169,204	
시세징수교부금	301,341,600	301,341,600	100.0	301,341,600	-각 자치구에서 징수한 시세 징수액의 3%를 지급하는 법정경비
지방소득세 소득분 특별징수 납세조항 보조	317,300	309,644	97.6	317,300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세조항(한국화웨이납세조항 등 17개 조항)에 대한 법정 징수교부금 지급
지방세고지서 인쇄통합관리	830,687	653,057	78.6	723,084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고지서 통합인쇄 및 봉투제작
상시세금 납부 체제 구축	132,682	130,500	98.4	130,685	-납세편의 서비스 제공 관련 수수료 지급 및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 업무 서울시분담금 지급 -납세편의서비스 : 카드이용납부, 문자안내, 편의점 납부 등
시세 세입 안정적 확보지원	190,260	171,620	90.2	181,860	-시책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 지급
모범납세자 지원	421,512	337,521	80.1	421,512	-ETAX 전자납부 마일리지 지급 -2016년도 모범 및 유공납세자 선정 위원회 운영
세무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	30,000	30,000	100.0	30,000	-세무공무원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연찬회 개최 (총 4회)
시세 세원발굴 지원	219,000	75,100	34.3	102,513	-민간인 및 공무원의 탈루·누락세원 발굴관련 포상금 집행 -분기별 자치구 시세 세원발굴 포상금 재배정
시 세입증대 자치구협력 및 지원사업	5,000,000	5,000,000	100.0	5,000,000	-자치구에 위임되어 징수되고 있는 시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누락세원 발굴, 체납세입 징수실적 등을 최대화하여 시 세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인센티브 지급 -2015회계 시세입 종합평가 및 체납 징수평가 자치구 지원사업비 교부6월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1,271,589	867,533	68.2	1,251,200	-세무종합시스템 응용프로그램 추가개발 및 기능개선 -응용프로그램 및 SW 유지보수 -지방세 부과 징수처리 및 운영 지원 -세무종합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 운영	42,367	30,750	72.6	42,050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 운영 및 상용 SW, DB 관리

구 분	'16년 예산현액	집행현황		결산전망	사업내용·추진실적
		금액	집행률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718,089	481,148	67.0	672,400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및 상용 SW, DB 관리
38세금징수과	8,241,351	7,503,860	91.1	8,170,951	
시세입 및 체납징수 활동 강화	2,513,560	1,820,114	72.4	2,443,160	-서울특별시세입징수공적심사 위원회 운영 : 연 6회 개최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 12월 집행예정 -체납시세 징수에 따른 시·자치구 징수공무원 포상금 집행
자동차세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 지원	5,449,291	5,449,291	100.0	5,449,291	-서울시설관리공단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 지원에 따른 대행 사업비 분기별 지급 -'16년 번호판 영치실적 : 108,951대 영치 : 54,009대, 예고: 54,942대
체납징수기법 공유 사·구 합동워크숍	13,200	13,200	100.0	13,200	-체납징수 협력체계 구축·강화와 징수공무원의 사기 고취를 위한 합동워크숍 개최 : 연2회 (5월,10월)
고액체납시세 징수 강화	265,300	221,255	83.4	265,300	-고액체납징수 및 채권확보 등을 위한 수수료 지급 -고액체납자 추적·조사를 위한 우편료 및 차량운행비 등 지급
행정운영경비(계)	650,204,741	553,586,400	85.1	635,120,749	
인력운영비(통합편성)	648,430,495	552,103,841	85.1	633,441,664	-본청 및 사업소 일반회계 소속 인건비 통합편성
기본경비	1,774,246	1,482,559	83.6	1,679,085	-부서별 기본경비